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(안)」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5. 11. 17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개정(제안) 이유

○ 옥외광고물등 관리법(2004.12.23) 및 같은법 시행령(2005.6.23)이 개정되어 시·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미관 향상 등 구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 요 골 자

○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(2005.6.23)되어 사도의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됨으로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05.12.31자로 폐지되고 2006.1.1부터는 자치구 조례로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여 전면개정

- 안제 1조(목적)
- 안제 2조(허가신고의 첨부서류)
- 안제 3조(신고필증 교부규칙)
- 안제 4조(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)
- 안제 5조(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허가신고)
- 안제 6조(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)
- 안제 7조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)
- 안제 8조(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)
- 안제 9조(연립 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)
- 안제10조(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
- 안제11조(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)
- 안제12조(에드빌콘의 표시방법)
- 안제13조(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
- 안제14조(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
- 안제15조(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)
- 안제16조(공연간판의 표시방법)
- 안제17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
- 안제18조(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설치·관리기준 등)
- 안제19조(벽보의 표시방법)
- 안제20조(현수막 지정 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)
- 안제21조(전단의 배부방법)
- 안제22조(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)
- 안제23조(표시방법의 완화)
- 안제24조(위원회의 구성)
- 안제25조(위원회의 기능 등)
- 안제26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
- 안제27조(안전도검사)
- 안제28조(안전도검사업무위탁)
- 안제29조(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)
- 안제30조(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)
- 안제31조(옥외광고업의 신고)
- 안제32조(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)
- 안제33조(교육의 위탁)
- 안제34조(수수료)
- 안제35조(과태료 부과징수)
- 안제36조(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)
- 안제37조(시행규칙)

관 련 법 규

-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· 같은법 시행령
-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

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개정준비중임

검 토 의 건

-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(2004.12.23) 및 같은법 시행령 (2005.6.23)이 개정되어 시·도의 권한 일체가 자치구로 이양됨으로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2005.12.31자로 폐지되고 2006.1.1 부터는 자치구 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를 표준안 으로 하여 전면개정하려는 것으로,
- 그 배경은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권역으로서 그 동안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조례에 의하여 적용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인접구간의 형평 유지 및 민원발생 예방 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

○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안제1조(목적)

안제2조(허가신고의 첨부서류)

안제3조내지 제4조(신고필증 교부 및 허가·신고사항의 기록관리)

안제5조(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허가·신고)

안제6조(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)

안제7조내지 제8조(광고물등의 표시금지물건 및 제한)

안제9조(연립간판의허가·신고 및 표시방법)

안제10조(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

안제11조(옥상간판의 표시방법)

안제12조(에드빌론의 표시방법)

안제13조(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

안제14조(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

안제15조내지 제19조(세로형간판·공연간판·현수막·벽보의 표시방법)

안제20조(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위탁)

안제21조(전단의 배부방법)

안제22조(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)

안제23조(표시방법의 완화)

안제24조내지 제26조(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

안제27조내지 제28조(안전도검사 및 위탁)

안제29조(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)

안제30조(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)

안제31조(옥외광고업신고)

안제32조내지 제33조(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)

안제34조(수수료)

안제35조(과태료 부과·징수)

안제36조(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)

안제37조(시행규칙)로 구성되어 있으며

○ 금번 조례개정시 신설(추가)한 내용으로는

- 안제7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“가로등 자동점멸기함”을 신설(추가)
- 안제19조에 “지정 벽보판의 설치관리 기준”을 신설(추가)
- 안제20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“위탁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안제24조에 “광고물 관리 심의위원을 3인 이상 9인이하”로 하였고
- 안제26조에 “위원회의 심의사항”을 신설(추가)하였습니다.

○ 완화된 내용으로는

- 안 제14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
 - 출입문 또는 창문면적의 각 1/20이내로 하되, “최대 0.6㎡”을 “0.8㎡”로
 - 업소당 표시면적은 “3㎡”을 “4㎡”로
 - 광고물 총수산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광고물 크기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이 “20㎝이하”을 “25㎝이하”로 다소 완화

이는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, 검토결과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.

2005. 12. 5

보고자 : 이 남 식